

제조/수입/유통/판매 사업자를 위한

어린이용품/생활용품/레저용품 KC인증 업무 안내

- ✓ KC인증
- ✓ R&D
- ✓ 교육
- ✓ 컨설팅
- ✓ 기업지원사업
- ✓ 바우처사업



❖ 어린이제품 KC인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거 어린이제품*은 시장출시 전 최소한의 안전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 어린이제품 제품안전관리 대상 품목?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4품목)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인증 번호	<p>*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통관 전 모델별로 안전인증 획득 *2년에 1회 정기검사(제품 또는 공장)</p>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16품목)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확인신고확인증 번호	<p>*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통관 전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시험·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p>
공급자적 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 (14+α품목)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휠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휠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및 개별기준이 없는 13세 이하의 어린이제품
	<p>*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자체 성적서, 원자재 성적서 등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p>

❖ 생활용품(레저용품 포함) KC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시장출시 전 최소한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생활용품(레저용품 포함) 제품안전관리 대상 품목?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5품목)	<p>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p> <p>*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통관 전 모델별로 안전인증 획득 * 2년에 1회 정기검사(제품 또는 공장)</p>
안전확인대상 생활제품 (26품목)	<p>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보행보조자,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기름난로, 전동보드,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건전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아외 운동기구, 가정용 미용기기</p> <p>*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통관 전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시험·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p>
공급자적 합성확인대상 생활제품 (17품목)	<p>가구 일부(높이 762mm 이상 서랍장/파일링 캐비닛),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쌍커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가속눈썹,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킥보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폴리염화비닐관, 자동차용 휴대용잭, 물탱크, 빙삭기,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p> <p>*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출고·통관 전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 또는 제3자에게 시험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 *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자체 성적서, 원자재 성적서 등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서류</p>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24품목)	<p>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간이빨래걸이,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파일링 캐비닛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침대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감열지</p> <p>*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 KC마크는 붙이지 않되,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안전성 확인 및 표시사항을 표시</p>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및 레저용품 분야에 대한 KC인증 및 검사, 교육, 컨설팅, R&D, 인증비용 지원사업 및 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KC 안전인증 품목 인증 절차?

01. 안전인증 신청



- 안전인증 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의 설명서 (사진포함)
- 대리인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02. 공장심사



- 평가항목
 - 제조설비
 - 자체검사설비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 일경통보/견적서발송, 수수료 납부
- 공장심사 비용
 - 최초 : 국내(25만원) / 해외(60만원)
 - 경기 : 국내(20만원) / 해외(48만원)

03. 제품검사



- 평가항목
 - 안전인증 부속서
- 견적서 발송 및 수수료 납부

04. 발급



- 합격 : 안전인증서 발급
- 불합격 : 결과통지서 발급

❖ KC 공급자격합성확인 품목 신청 절차?

01. 신청



- 공급자격합성확인 시험신청서
- 검사용 제품 (시료)
-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02. 접수



- 견적서 발송
- 수수료 납부

03. 시험·검사



- 평가항목
 - 공급자격합성확인 부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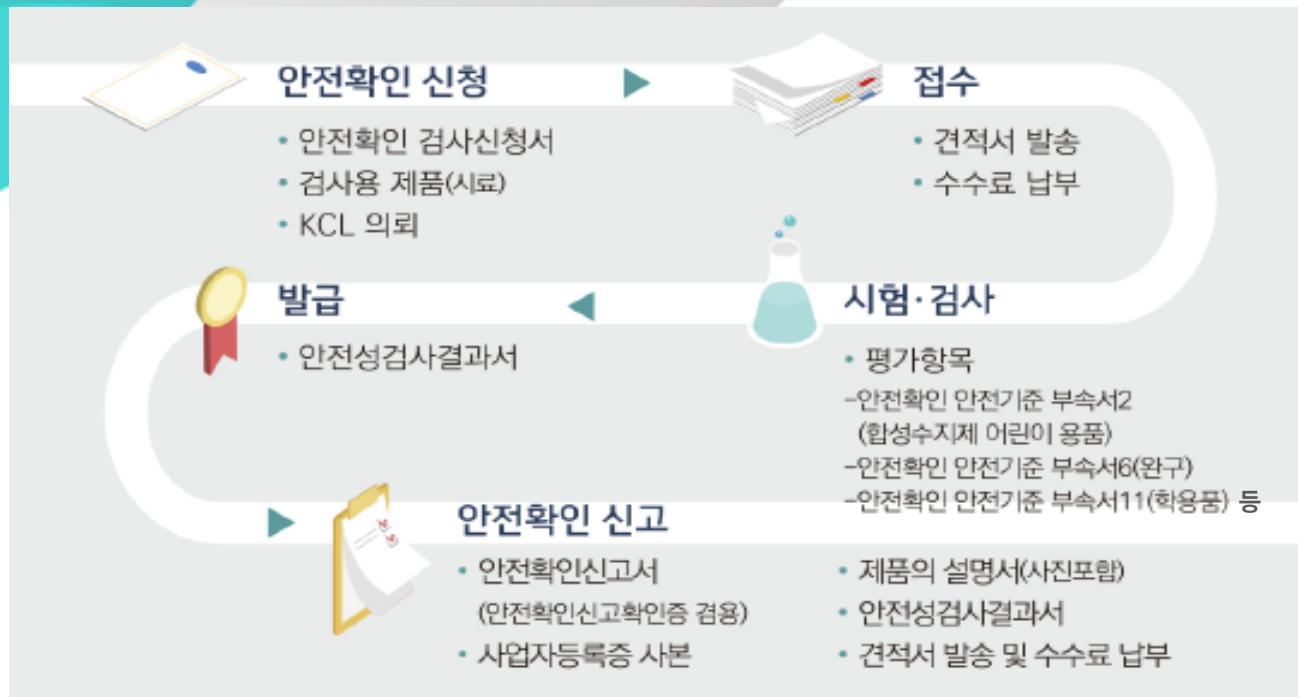
04. 발급



- 성적서 발급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및 레저용품 분야에 대한 KC인증 및 검사, 교육, 컨설팅, R&D, 인증비용 지원사업 및 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KC 안전확인 품목 검사 및 신고 절차?



검사시료 개수 : 제품 2세트(검사신청서 첨부 필수)

검사비 : 별도문의(제품별로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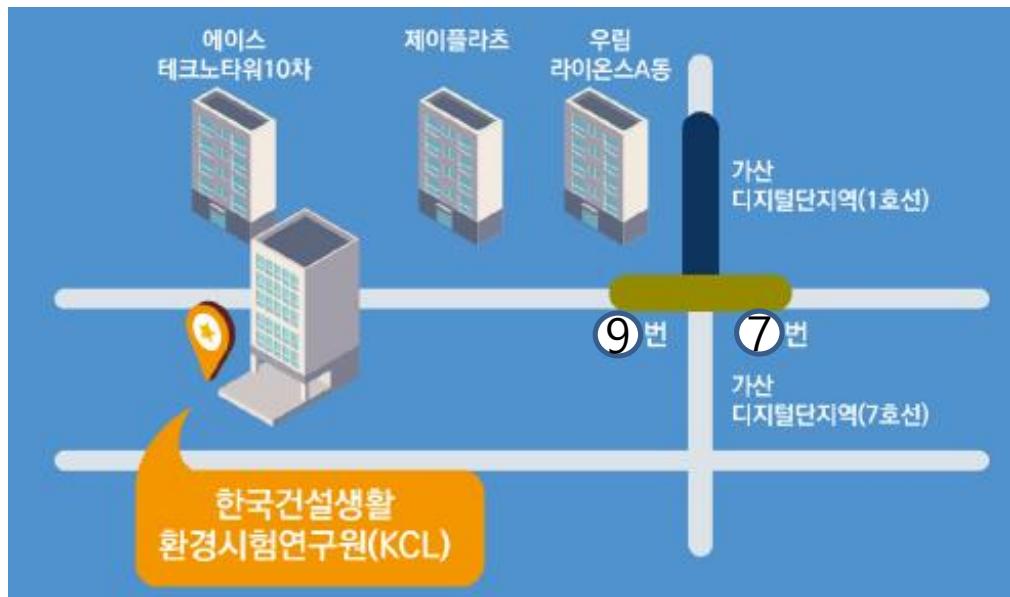
접수방법 : 창구접수 및 택배접수 가능(온라인접수 불가)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CS팀

❖ 검사신청서 양식은 어디에?



KCL 가산 연구동 위치 안내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담당 연락처

업무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인증 접수	CS팀	02-2102-2500	asco@kcl.re.kr
인증 신고	KC인증센터	02-2102-2747	asco@kcl.re.kr
검사 문의	어린이제품센터	02-2102-2530~6	safe@kcl.re.kr